

| | | |
|----------|------|---|
| 의안 번호 | 2474 |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4·4 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10. 2.(목) 김도운 의원 외 9명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0. 2.(목)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0. 16.(목)

2.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지역에서 일어난 4·4 독립만세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 사업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여 후대 교육 및 문화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기념사업 등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안 제5조)

4. 근거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1919년 4월 4일 병영 장날에 모여 일제에 항거하여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의거인 병영 4·4 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기념사업 등에 대한 규정,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 등임.
- 현재 집행부에서는 희생·공헌자 추모행사 및 재현행사는 실시하고 있으나 그 외 교육 및 홍보, 기념관·전시관·조형물·상징물 등 조성 관리, 역사 자료 수집 및 분석 등 세부적 시책 추진을 위한 내용을 추가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본 조례 제정으로 울산 중구 병영4·4독립만세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 지역의 자긍심 고취와 애국정신 계승·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거법규

문화예술진흥법

-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